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68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원중, 김태수, 남창진,
윤종복, 이종환, 홍국표
의원(9명)

1. 제안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 방치 및 훼손 등으로 당초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역세권 주변의 훼손지는 도시 계획적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하여 훼손지 복구, 역세권 연계 개발 등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 (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서, 훼손지 복구, 완충기능 회복, 부지활용 등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방치 및 훼손으로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하여,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토지이용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준을 신설하는 절차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과 |
| 재정분석과장 | 이 선 희 |
| 입법재정지원1팀장 | 김 선 희 |
| 추 계 분 석 관 | 김 경 명 |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